

제183회 영등포구의회
2014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4. 9. 25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호로 2014년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
되어 2014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의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
교육의원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,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여
원활한 교육경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(안 제7조제3항)
 - 위원 중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전문가로 대체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중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10.2.26 부칙 제2조)에 따라 2014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한 “교육의원”을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, 전문가로 대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